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7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01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6. 9. 8.

판 결 선 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57,273,180원, 지방교육세 18,472,790원, 농특세 29,717,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7

가. 원고는 2013. 3. 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내의 산업용 건축물[1]에 해당하는 [redacted]구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3. 5. 2.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부속토지 1475.55㎡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는 2010. 11. 23. 이미 감면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입주예정이던 업체들의 입주가 지연되거나 취소되자 2014. 5. 1. 원고의 직원인 B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89실 및 근린생활시설 1실(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C라는 상호로 2014. 5.경부터 2015. 3. 10.경까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숙박업신고 없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이용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6. '이 사건 오피스텔이 2014. 5.경부터 2015. 3. 10.까지 무신고 숙박시설로 사용되었고, 이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5항의 산업단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부분과 관련하여 취득세 379,480,780원, 지방교육세 18,472,790원, 농특세 23,090,980원을, 위 부속토지와 관련하여 취득세 77,792,400원, 농특세 6,627,010원을 각 추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용 건축물을 말한다.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화 · 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음악 · 게임과 관련된 산업, 출판 · 인쇄 · 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문화콘텐츠 · 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 · 광고 · 공연 · 미술품 · 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 · 가공 · 개발 · 제작 · 생산 · 저장 · 검색 ·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 · 박람회 · 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등이 해당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업무의 편의 및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그 적격자인 B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임차인인 B은 일시적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숙박시설로 사용하였을 뿐이며 원고는 사업개시 이후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고 있는 등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추징요건 해당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에서 산업용건축물을 해당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같은 법 제78조 제4항 제2호의 취지는 산업용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7

을 확대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용건축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데에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해당 용도로 사용한 지 2년 이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가 당초 취득목적(문화산업용)과는 다른 용도인 공중위생관리법상의 무신고 숙박업의 용도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원고도 임차인이 문화콘텐츠 사업지원의 본래 취득목적이 아닌 운휴자산의 변동비목적으로 숙박시설로 사용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 사용행위는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14.경 원고 법인 대주주 [redacted]의 법정관리 진입과 문화컨텐츠 사업주체로 입주하기로 하였던 기업의 입주철회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 기인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대경위 및 임대목적(문화교류사업의 숙박시설), 오피스텔 관리업무의 효율성 등을 들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법 제78조 제5항 제1호와 달리 제2호 추징규정의 문언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는 점, 설령 정당한 사유의 요건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데다가, 원고 주장과 같은 외부적 · 내부적인 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오히려 원고의 관리 · 감독 소홀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임대차계약상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추징배제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7

속재량행위인지 또는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제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등 참조).

관계법령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를 필요적으로 일정한 세율에 의하여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다가 위 법 제78조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 형식에 비추어 과세관청에 추징 여부를 결정하거나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김용민

판사 심우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7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11-07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집단에너지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